

규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8년 6월

동태적 혁신경쟁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고찰*

권영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혁신이므로 동태적 혁신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따라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우월적인 혁신이 시장에서 선택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시 동태적 혁신경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기존의 정태적 관점에 기반한 경쟁법 집행의 도구들은 동태적인 혁신경쟁을 고려하는데 커다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법 집행시 구체적으로 동태적 혁신경쟁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동태적 혁신경쟁의 본질에 대해 고찰함과 동시에 동태적 혁신경쟁을 고려하기 위한 경쟁법 집행 접근법들과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경쟁법 집행 시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효과적인 고려를 위해서는 대안적인 접근법들의 우열에 집착하기보다 개별 사건의 본질과 특성, 혁신경쟁의 특성을 충

* 본 논문은 2017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본연구과제로 저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동태적 혁신경쟁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youngkwan.kwon@gmail.com)

접수일:2017/11/8, 심사일: 2017/12/13, 게재확정일:2017/12/22

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세 가지 접근법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동태적 혁신경쟁에 관한 혁신효과와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잠재적 진입자의 진입가능성 뿐만 아니라 기존기업 또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혁신 인센티브, 혁신의 발전경로 등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핵심 용어: 혁신경쟁, 동태적 경쟁, 혁신, 경쟁법, 접근법

I. 서론

지식기반사회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신산업이나 기존의 하이테크(High-tech) 산업들에서는 정태적 경쟁(Static competition)¹⁾보다 동태적 혁신경쟁(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²⁾이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지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동태적인 혁신경쟁에 대한 학계와 경쟁당국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³⁾ 이런 특성을 갖는 시장 내지 산업들에서는 경쟁의 본질 내지 특성이 전통적인 산업들에서의 경쟁 - 주로 가격, 산출량, 광고 등을 통한 경쟁 - 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반독점(Antitrust)과 관련된 경제학 및 법학 분야의 저명학자들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 동태적인 혁신경쟁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80년대 후반 ~ 90년대 초반부터 중요한 연구이슈로 다뤄오고 있다. Jorde & Teece(1992)⁴⁾는 당시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던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문헌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한 바 있으며, 이후 동태적 혁신경쟁에 관한 반독점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Yao and deSanti(1993) 역시 동태적 혁신경쟁이 주도하는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에 대한 평가 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Teece and Coleman(1998) 역시 동태적

1) 정태적 경쟁은 흔히 기존의 제품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 간의 “가격” 이나 “산출량” 등에 기반한 경쟁을 의미함(Sidak, J.G. and Teece, D.J., 2009, Dynamic Competition in Antitrust Law,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5(4), p.602 참조)

2) 일반적으로 동태적 혁신경쟁은 가격, 산출량 등이 아닌 주로 제품혁신, 공정혁신, 비즈니스 모델혁신 등 주로 혁신(Innovation)을 통한 경쟁을 의미함(Sidak, J.G. and Teece, D.J., 2009, Dynamic Competition in Antitrust Law,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5(4), p.604 참조).

3)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최근 혁신경쟁의 촉진을 공정위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관련 기사로 2017.7.10.자 연합뉴스 (김상조 “경쟁법 집행에 경쟁도입…민형사 수단 활용”)제하 기사 참조.

4) Jorde, T. M. & Teece, D. J. (1992). Antitrust,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경쟁을 통한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장에서 정태적 관점에 기반해 시장을 획정할 경우 시장을 지나치게 좁게 획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해외의 반독점 분야 선진 경쟁당국은 반독점법 집행에 있어 동태적 혁신경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법 집행 시 동태적 혁신경쟁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미국의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와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의 경우 동태적 혁신경쟁을 경쟁법 집행 시 반영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s)과 IP 가이드라인⁵⁾에도 반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공정거래 사건을 다룸에 있어 동태적 혁신경쟁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⁶⁾ 대법원 판례⁷⁾에서는 추정요건 뿐만 아니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들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러한 판례들을 반영하여 2007년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위는 기업결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함에 있어 신규진입의 가능성에 주로 초점을 맞춰 동태적 혁신경쟁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생각된다. 물론 신규진입과 진입장벽이 동태적 혁신경쟁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동태적 혁신경쟁의 범위는 기존의 관련 제품 또는 지리적 시장에서의 진입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정책 내지 경쟁정책을 다루고 있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동태적인 혁신경쟁과 관련해 경쟁법 집행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존에 경쟁당국이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태적 경쟁과 비교해 동태적 혁신경쟁이 어떤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경쟁의 본질(Nature)”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태

5)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1995. 동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IP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며, 2017년 1월에 개정되었음

6)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상 동태적 혁신경쟁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서 기업결합(특히,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경쟁제한성에 대한 추정요건에 대한 규정이 있음

7) 대법원 2009. 9. 10, 2008두9744 ; 대법원 2008. 5. 29, 2006두6659 등

적 경쟁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접근법들이 동태적 혁신경쟁에서는 어떠한 한계점을 갖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끝으로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다양한 이론 내지 접근법, 그리고 해외의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경쟁법 집행 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혁신경쟁의 본질과 경쟁 정책적 의의

1. 혁신경쟁의 본질과 이론적 발전

동태적 혁신경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태적 혁신경쟁에 관한 이론들 중 어떤 특정 이론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동태적 혁신경쟁에 관해 지금까지 개발되어 오고 있는 이론들은 조지프 슈페터(Joseph Schumpeter)의 선구적인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Schumpeter, 1942). 슈페터는 현실의 실제 시장이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인류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진보는 혁신경쟁, 즉 새로운 제품, 기술, 공급원, 그리고 새로운 기업조직의 형태를 수반하는 형식의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슈페터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급원, 새로운 유형의 조직으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하는데, 그런 경쟁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용우위 또는 품질우위를 이용하는 경쟁으로써 이윤과 산출량 같은 주변부가 아닌 기업의 존립기반과 생존 자체를 강타한다.”(Schumpeter, 1942: 84)

이처럼 슈페터는 비록 시장에서 기업이 가격 또는 산출량 경쟁 등과 같은 정태적 경쟁에 직면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되기는 하지만 그런 정태적인 경쟁은 기업의 생존이나 존립 측면에서 보면 부차적인 경쟁 요소라고 보았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경쟁은 바로 가격을 한계비용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비용함수를 만들어 내는 것(process innovation)이며, 그 결과 단순한 가격경쟁 보다 훨씬 더 높은 장기적인

편익(long-run benefits)을 얻고자 하는 경쟁이라고 슈페터는 보았다. 나아가 슈페터는 혁신은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생적으로 창출되면서 기존의 경제구조와 시장의 경쟁구도를 대체하여 새로운 경제구조와 경쟁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Schumpeter, 1942: 83).

또한 슈페터는 경쟁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혁신은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보다는 균형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변화(disequilibrating change)를 초래하며,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도록 하는 힘은 바로 “모방(Imitation)”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혁신은 시장 또는 경제가 균형 상태에서 이탈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은 변화에 저항하는 기업보다 훨씬 더 큰 이윤을 얻는 반면(Schumpeter, 1942: 131-132) 모방 기업들은 새로운 혁신들 중 어떤 혁신이 우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관찰한 후, 우월한 새로운 혁신들을 자신의 조직과 통합시키며, 모방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혁신을 채택한 기업들의 초정상 이윤(supranormal profits)이 낮아져, 궁극적으로 모든 초정상 이윤이 완전히 사라지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Schumpeter, 1939:47). 슈페터는 또한 기업이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를 위한 경쟁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R&D 자원을 가지고 있고 시장 내에서 경쟁의 압력이 낮은 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소기업에 비해, 그리고 독점기업이 경쟁기업 보다 더 혁신적이며, 나아가 자신이 만들어낸 혁신에 의해 창출되는 시장영향력(market power)을 전유할 수 있는 경우에 더 혁신적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는데, 이를 소위 “슈페터 가설(Schumpeter hypothesis)”이라 부른다.

이후 슈페터의 이론을 계승한 다양한 학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진화주의 경제학자들⁸⁾과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 중 일부⁹⁾도 슈페터 이론을 지지하면서 기업 간 경쟁에서 혁신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오고 있는데, 그들은 슈페터가 강조한 동태적인 혁신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혁신경쟁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왔다(Dosi, 1982; Malerba and Orsenigo, 1995; Breschi et al., 2000 등). 이런 후속적인 연구들에서는 경쟁의 개념을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a

8) 진화주의 경제학에서 동태적인 혁신경쟁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Nelson and Winter(1982)가 있음
9) 신고전 경제학자들 중 가격, 산출량 등 전통적인 경쟁보다는 혁신에 의한 동태적인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한 초기의 연구들로는 Futia(1980), Dasgupta and Stiglitz(1980), Loury(1979) 등이 존재함

process of the discovery of new knowledge)”으로 이해하면서 슈페터 이론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혁신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줌으로써 슈페터 이론에 대한 보완적인 이론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진화주의 경제학자들은 “혁신이 발전의 주된 동력이다”라는 슈페터의 주장을 더 구체화하고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생물학의 진화이론에 기반한 모형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선구적인 연구가 Nelson and Winter(1974)와 Nelson, Winter and Schuette(1976)이다. 이런 진화이론에 기반한 경쟁이론에서는 기업들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Simon(1955)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선택이 이후 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그런 변화에 대한 기업의 반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기업이 시장조건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Nelson, 1991). 나아가 진화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기업은 새로운 생산 공정, 새로운 기술 및 제품 등과 같이 다양한 기술혁신을 실험과정을 통해 창출하지만 창출된 혁신들 중 일부만 시장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되며, 경쟁자들에 의해 모방되면서 경쟁 과정이 전개된다고 보면서 동태적 관점에서의 경쟁적 시장이 우월적인 혁신을 선택하고 후속적인 변화의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Nelson, Winter and Schuette, 1976)함으로써 슈페터 이론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환경에 적합한 혁신들과 그런 혁신들을 모방한 기업들이 빠른 성장을 통해 해당 산업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입증됨으로써 진화이론에 기반한 모형이 높은 현실 설명력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렸다(Nelson and Winter, 1974)

한편 동태적 혁신경쟁이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은 불확실성이 높으며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와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의 기술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런 특성은 전통적인 신고전 경제이론이 가정하는 수확체감(decreasing returns)의 가정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Arthur, 1990). 동태성이 높은 혁신적인 산업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 비용과 가격적 열위에 처한 기업은 생존위기에 직면하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초기에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기업들이 경쟁자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우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소위 “경로의존성 이론(Theory of path dependence)”이라 한다. 동 이론에서는 경쟁과정에 있어 “기술변화(technological change)”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경쟁과 기술변화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초기 연구로 Dosi(1982), Dosi et al.(1992)이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초기 조건의 작은 변화 내지 차이가 이후 시장의 변화 내지 진화의 방향 및 속도 등에 매우 커다란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그런 후속적인 변화를 쉽게 예측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경로의존성 이론은 경쟁이 반드시 더 우수한 혁신이나 가장 효율적인 기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초기에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은 초기에 얻은 우위를 사용해 경쟁자들을 선도하게 되며, 그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되며, 사실상 시장이 선도 기업에게 구속(lock-in)되어 선도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점점 높아진다(Arthur, 1986; Rockoff, 1994). 경로의존성 이론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그런 구속(lock-in)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경로의존성 이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가정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지만, Arthur and Lane(1994)은 만약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열등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제품에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경로의존성 이론의 일부 가정들을 완화하더라도 구속(lock-in)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2. 동태적 혁신경쟁의 경쟁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 검토한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동태적 혁신경쟁이 경쟁 정책적 측면에서 새롭고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분명하다. 우선 동태적 혁신경쟁이 중요한 산업 내지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장 경쟁의 실질적인 특징과 그런 경쟁의 궁극적인 효과가 발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 지배적 사업자 또는 독점기업 등이 있다하더라도 나중에는 혁신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달성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기업이 시장영향력(market power)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반경쟁적인(anticompetitive)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시장영향력을 갖는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혁신을 창출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도 있으며, 나아가 현재 시장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거의 혁신을 통해 그런 시장영향력을 획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석결과를 보면, 더 높은 혁신성이 더 빠른 성장과 더 높은 집중(market concentration)을 초래한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Nelson and Winter, 1982).

한편 규제당국 또는 경쟁당국이 시장경쟁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시장 진화의 초기단계에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비록 앞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들이 동태적 혁신경쟁이 발생하는 시장에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즉 정부 개입의 조건 및 방식에 대한 명확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지는 못하지만, 시장이 장시간 동안 진화해오면서 이미 거의 구속(Lock-in)이 발생한 시장에 정부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뒤늦게 개입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명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명백하게 우월한 대안”을 무시하고 있다면, 표준화(Standardization)와 같이 정부가 초기에 적시에 개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시장구조(Market structure)가 시장경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시장구조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시장구조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데는 시장구조가 기업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은 시장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구조보다 기업의 전략과 그에 따른 수익성(profitability)과 같은 기업의 성과가 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실증적 증거들이 충분히 발견되고 있다.

또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경쟁을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혁신 창출을 위한 노력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며 실패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기업 간의 동태적 혁신경쟁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창출한 기업이 혁신의 초기에는 초정상적인 이윤(supranormal profits)을 누리는 것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역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III.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기존 경쟁법 집행 접근의 한계

1. 동태적 혁신경쟁에 관한 미국과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심사기준

경쟁법 집행에 있어 동태적 혁신경쟁을 고려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미국의 DOJ와 FTC가 현대적인 기업결합분석을 시작한 1982년 「기업결합심사지침(Merger Guidelines)」¹⁰⁾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이다. 동 심사지침은 다양한 유형의 기업결합 - 가장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수평적 경쟁자들 간의 기업결합(수평형 기업결합), 수직적 기업결합, 특별한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기업결합 등 -에서의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동 심사지침의 Section 4.11에서 “잠재적 경쟁이론(theory of potential competition)”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시장에 있는 기존 기업과 당해 시장의 외부에 있는 기업들 간의 기업결합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명제(proposition)를 전제로 하고 있다.

1982년 잠재적 경쟁이론이 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지침에 반영된 이후 미국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심사지침을 수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경쟁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진입, 효율성, 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으로 확장해 왔다. 이런 배경에는 기업결합 시 잠재적 경쟁에 대한 법적인 입증기준이 보다 엄격해진 점과 함께 미국의 경쟁당국과 법원이 기업결합에 대해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당국의 태도가 현저하게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10년 개정 기업결합심사지침¹¹⁾에서 미국 경쟁당국은 잠재적 경쟁을 제거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면서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경쟁당국의 관심이 새롭게 재등장하였다. 2010년 미국의 기업결합심사지침에서는 경쟁당국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를 수반하는 기업결합에 관해 ...(중략)... DOJ와 FTC의 주요 분석기법, 실무 및 집행정책의 윤곽을 기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²⁾ 나아가 미국의 2010년 기업결합심사지침에서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

10) U.S. Department of Justice, Merger Guidelines, 1982

11) U.S. Department of Justice & Federal Trade Commission,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2010

12) 전제서 1면

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시 당해 기업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혁신노력의 수준 이하로 합병기업이 혁신노력을 감소함으로써 혁신경쟁을 저해할지 여부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그런 혁신의 감소는 기존 제품의 개발노력을 지속할 인센티브가 낮아지는 형태 뿐 아니라 새로운 제품 개발을 개시할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형태도 취할 수 있다”¹³⁾

이와 같이 미국 경쟁당국의 태도변화는 크게 2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기업결합이 기존 기업들의 시장영향력 행사에 대한 경쟁적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제학적 증거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기업결합의 발생빈도 역시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정위 역시 동태적 혁신경쟁과 관련해 미국의 기업결합심사지침에서와 마찬가지로 잠재적 경쟁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중요한 고려요소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관련 시장에 신규진입이 발생할 경우 기존 기업의 시장지배력 행사가 제한된다는 인식 하에, 어떤 제품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신규진입을 경쟁제한성 평가의 한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¹⁴⁾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위는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⁵⁾ 나아가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규모,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입지조건, 원재료 조달조건,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제품차별화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¹⁶⁾

신규진입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

13) 전계서 23면(\$6.4)

14) 공정거래위원회(2015.6.30) 기업결합심사기준 (이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기준”) VII-2

15)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기준 VII-2-가

16)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기준 VII-2-나

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

이상과 같이 단순히 심사기준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공정위 역시 동태적 혁신경쟁을 특히 “잠재적 진입” 측면에 초점을 맞춰 명확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의 기업결합심사지침과 비교했을 때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고려는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 접근법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기업결합이 혁신경쟁에 미치는 효과, 즉 “혁신효과”를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2. 기존의 경쟁법 집행 접근의 한계

최근의 다양한 반독점 사건들은 경쟁법을 집행함에 있어 동태적 혁신경쟁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일부 사건들의 경우에는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간의 복잡한 관계가 사건의 문제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라이선스 거절(refusal to license) 사건, 표준필수특허(SEPs) 사건, 특허풀 및 교차라이센싱 사건, 제약산업에서의 특허분쟁합의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CT분야의 경우에는 플랫폼(Platform) 전략이 경쟁전략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아직까지 충분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외에서 경쟁법을 집행함에 있어 동태적인 혁신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이나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존재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혁신경쟁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쟁당국의 개입이 경우에 따라서는 혁신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혁신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권남훈(2012)은 경쟁법이 가격이나 수량을 통한 경쟁

17)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기준 VII-2-라

뿐만 아니라 혁신을 위한 또는 혁신을 통한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동태적 혁신경쟁이 중요한 시장에 대해 기존의 정태적 관점에서의 경쟁법 집행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하고 있다. 첫째, 혁신경쟁이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에서 경쟁법을 집행할 경우 법집행 과정에 오관의 가능성이 높으며 오관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으며, 둘째, 실무적 관점에서 시장획정, 시장영향력 등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단계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을 동태적 혁신경쟁이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해 상당부분 동의를 한다. 동태적 혁신경쟁이 갖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동태적 혁신경쟁이 중요한 시장에 대해 정태적 관점에 기반한 경쟁법을 집행하게 된다면 혁신의 다양한 측면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빠른 기술진보, 높은 고정비용과 매우 낮은 변동비용, 승자독식의 특성을 갖는 거대한 네트워크 효과 또는 자연독점의 특성을 갖는 IT산업과 인터넷 산업 등은 그 특수성 때문에 시장을 획정하는 것 자체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선두기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혁신에 의해 매우 빠르게 자신의 지배적인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쟁법 집행 시 전통적인 지표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은 기업의 경쟁상의 위치(competitive position)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명확한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혁신과 경쟁과의 관계 및 양자의 상호작용, 나아가 경쟁의 정태적 차원과 동태적 차원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쟁과 혁신 간의 상호작용만 보더라도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선행연구들은 주로 혁신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혁신의 인센티브는 혁신경쟁을 하는 기업의 수에 의존할 수 있는데,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혁신의 인센티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나치게 혁신경쟁을 하는 경쟁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혁신의 인센티브가 감소할 수 있다(Kamien and Schwartz, 1976; Scherer and Ross, 1990).

이러한 경쟁압력의 강도와 혁신인센티브와의 비선형적인 관계는 그 자체로서도 경쟁법 집행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혁신경쟁의 강도가 단순히 시장 내의 경쟁압력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난해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해 혁신을 위한 경쟁의 강도는 혁신경쟁의 장에서 자신의 위

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Dasgupta and Stiglitz, 1980; Lee and Wilde, 1980; Reinganum, 1983), 나아가 혁신에 관련된 경쟁자들 간의 지식스톡의 비대칭성, 즉 지식 축적의 양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Fudenberg et al., 1983). 그 뿐만 아니라 혁신경쟁은 창출된 혁신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강한지의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혁신에 대한 지재산권(IPRs)의 보호가 불완전할 경우 창출된 혁신에 관한 지식이 외부로 파급(spillover)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혁신인센티브를 약화시키게 되므로, 이런 지식파급을 내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혁신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Aspremont and Jacquemin, 1988). 혁신과 경쟁과의 비선형적인 관계는 제품시장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데(Aghion et al., 2001, 2005), 이러한 연구결과가 흥미로운 점은 경쟁압력이 약한 시장에서는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혁신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극심한 경쟁압력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선두기업이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다는 것이 발견된다는 점이다(Boone, 2000, 2001).

IV.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경쟁법 집행 접근법에 대한 고찰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동태적 혁신경쟁이 중요한 시장 내지 산업에서 기존의 정태적 관점에서의 경쟁법 집행 접근 내지 도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발 및 적용되고 있는 접근법과 구체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잠재적 경쟁이론 및 사례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20세기 초반 John Bates Clark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the real dangers of the trusts”라는 논문¹⁸⁾에서 그는 불완전 경쟁(incomplete competition)이라 하더라도 시장진입 위협에 대

18) Clark J. B. (1904). The Real Dangers of the Trusts. The Century Magazine 68

한 자각이 존재하면 기존 기업들은 자신들의 시장영향력(market power)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소위 “규율효과(disciplining effect)”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많은 학자들은 잠재적 경쟁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특히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되면서 이런 잠재적 경쟁의 특징은 “인지된 잠재적 경쟁(Perceived Potential Competition)”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⁹⁾ 인지된 잠재적 경쟁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해 기존 기업은 신규 진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이윤을 얻지 못하도록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인지된 잠재적 경쟁자가 실제로는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인지된 잠재적 경쟁자가 없어지게 되면 현재 또는 미래의 시장구조에 변화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기존기업들은 잠재적인 경쟁자가 사라질 경우 자신들의 시장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인지된 잠재적 경쟁 개념을 수용해 Gilbert and Newberry(1982)는 독점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인지된 잠재적 경쟁이라는 개념이 시장진입 위협을 인지함으로써 인해 기존기업의 혁신인센티브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미래의 제품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경쟁, 즉 혁신경쟁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혁신경쟁을 유효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을 식별하기 위해 단순히 현존하는 제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관점으로 혁신경쟁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경쟁당국이 일단 기존의 어떤 제품시장의 외부에 있는 기업이 당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R&D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을 경우, 그 기업을 인지된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잠재적 경쟁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진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래에 특정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거의 확실히 예상되는 기업을 인지된 잠재적 경쟁자와 구분해 “실질적 잠재적 경쟁자(Actual Potential Competitors)”라고 부른다. 실질 잠재적 경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잠재적 경쟁을 경쟁당국이 고려할 때 한결 수월해 질 수 있다. 즉 어떤 특정 제품시장이 현존하거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만들어진다

19) United States v. Falstaff Brewing Corp., 410 U.S. 526(1973); FTC(1996), Anticipating the 21st Century: Competition Policy in the New High-Tech, Global Marketplace, Ch.7

면, 당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R&D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실질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할 수 있다.

경쟁법 집행 시 잠재적 경쟁을 고려하기 위해 실질 잠재적 경쟁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의 유용성이 확실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법 집행 시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실질 잠재적 경쟁의 개념은 기존 또는 가까운 장래의 제품시장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거나 가까운 장래에 출현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제품시장을 목표로 한 혁신경쟁을 고려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잠재적 경쟁이론에 기반하여 혁신경쟁을 다룬 사건들이 미국에서 일부 보고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Hoechst-Morion Merrell Dow 기업결합 사건이다.²⁰⁾ 동 사건에서 FTC는 관련시장을 협심증 치료제인 Diltiazem, Mesalamine, Rifampin, 간헐과행증 치료제와 같이 4가지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시장으로 획정을 하였다. 상기 4가지 관련 시장에서 기업결합 당사기업인 Hoechst와 Morion Merrell Dow 적어도 두 기업 중 하나는 기존기업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기업은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R&D를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잠재적 경쟁자로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 하에 FTC는 이들 두 기업이 기업결합을 할 경우 상기 4개의 관련시장에서 실질 잠재적 경쟁자가 사라지게 된다고 판단해 잠재적 경쟁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자산(essential assets)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며, 기업결합 당사기업들은 이런 경쟁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잠재적 경쟁이론(Potential competition doctrine)은 기존의 제품시장 주변에 관련 기업이 위치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제품시장이 미래에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을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혁신경쟁을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현존 제품시장에 있는 기존 기업과 당해 시장의 외부에 있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시장을 형성하게 될 혁신을 위해 경쟁적으로 R&D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그런 제품들이 장래에는 실질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잠재적 경쟁이론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만약 혁신경쟁에 의해 기존의 동일 제품시장에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이 창

20) Hoechst AG, 120 F.T.C. 1010 (1995)

출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면, 실질 잠재적 경쟁(Actual Potential Competition)의 개념을 적용해 그런 혁신경쟁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혁신경쟁의 결과가 완전히 새로운 제품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시장진입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 잠재적 경쟁개념이라 하더라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2. 혁신시장 접근법 및 사례

Gilbert and Sunshine(1995)는 혁신을 위한 경쟁자들을 식별하여 반경쟁적 효과와 효율성 증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5단계 절차로 구성된 혁신시장분석(Innovation Market) 접근법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대체관계에 있는 혁신활동을 식별하는 단계로, 예컨대 기업결합 당사 기업들의 R&D 활동들이 중첩되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이 경우 두 기업이 보완적이거나 독립된 연구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동일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체적인 연구노력을 하고 있다면, 후속 단계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2단계는 혁신을 위한 진입장벽으로 볼 수 있는 R&D에 필요한 특수자산(special assets)을 식별하는 단계인데, 만약 그런 특수자산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혁신시장을 확정할 필요가 없다(Gilbert and Sunshine, 1995, p.588). 다음의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혁신경쟁을 하고 있는 관련 경쟁자들을 찾아내는 단계로 혁신시장을 확정하는 단계이며, 4단계는 확정된 혁신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기업결합 행위의 경우에는 1) 합병된 기업이 단독행위 또는 협조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R&D를 줄이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능력과 인센티브를 가지는지의 여부, 2) 다른 경쟁자들의 전략들을 무용하게 만드는지의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평가한 후 혁신에 관한 효율성 증가를 비교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Gilbert and Sunshine(1995)의 아이디어는 1995년 미국의 DOJ와 FTC에 의해 제정된 IP 가이드라인(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에 반영되어 있으며, 동 IP 가이드라인을 통해 혁신시장분석 접근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최초로 인정받았다. 동 IP 가이드라인에서 미국 DOJ와 FTC는 시장의 유형을 제품시장, 기술시장(technology market), 혁신시장(innovation market)으로 구분하였는데, 혁신시장은

기술시장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시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DOJ & FTC, 1995, 11).

“혁신시장은 새롭거나 개선된 재화나 공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R&D와 그런 R&D에 대한 밀접한 대체제로 구성된다. 이 밀접한 대체제란 예컨대 R&D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독점자의 능력 및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관련 R&D에 대한 시장영향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R&D, 기술 및 재화이다. 경쟁당국은 관련 R&D에 참여하는 능력이 그 기업들의 특수한 자산 또는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혁신시장을 확정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시장분석 접근법이 제안된 이후 많은 법률가 및 경제학자들에 의해 동 접근법은 커다란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그런 비판론자들의 핵심적인 논거는 1) 동 접근법이 주로 혁신활동으로 R&D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R&D는 혁신의 투입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R&D가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결과물인 혁신은 무시하고 있다는 점(Hoerner, 1995; Morse, 2001; Carlton and Gertner, 2003), 2) 혁신활동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한 혁신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 경쟁자들을 경쟁당국이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라는 점(Rapp, 1995; Gartner, 2003)이다.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접근법들 중 혁신시장분석 접근법을 대체할 만한 정량적 접근법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경쟁법 집행 시 혁신시장분석 접근법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 당위성은 없겠지만 그런 관점을 고려해 기업결합이나 다른 경쟁 제한적 행위들이 혁신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혁신시장 접근법과 관련된 반독점 사건으로 대표적인 예가 1998년 Lockheed Martin사의 Northrop Grumman사 합병 시도 건²¹⁾인데, 미국 DOJ는 양사 간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하였다. 동 사건에서 미국 DOJ는 10개의 관련시장을 확정하였는데, 그 중 9개의 시장에서 혁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DOJ는 양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시장에서

21) U. S. v. Lockheed Martin Corp., Civ. No. 98-00731 (1998)

의 정태적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혁신경쟁에 대한 분석과 특수자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DOJ는 미 공군을 위한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 개발 관련 시장과 관련해, 양사 간의 기업결합이 정태적 비효율성(비용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 뿐만 아니라 혁신 저해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DOJ의 이런 판단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만들어질 것으로 확실히 되는 미래 제품시장을 위한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명확히 식별하고 혁신경쟁에 미칠 효과를 평가하였다는 점, 미래 제품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혁신경쟁의 보호”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Gilbert and Sunshine(1995)가 제시한 5단계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제시한 혁신시장 접근 내지 아이디어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사례로 폼페(Pompe)병 치료를 위한 폼페 효소 대체치료(ERT)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Genzyme과 Novazyme 두 제약회사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FTC가 사후적으로 동태적 혁신경쟁의 저해 우려를 조사한 바 있다.²²⁾ 당시 희귀성 질병인 폼페병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폼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폼페병 치료제가 출시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최초의 치료제가 수개월만 일찍 출시되더라도 환자들은 커다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최초 치료제 이후 경쟁 의약품이 출시된다면 소비자 후생은 치료제 가격의 하락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최초의 치료제가 양 기업들 중 한 기업에 의해서라도 더 빨리 출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비록 FTC는 조사를 마친 후 미래의 폼페병 치료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Genzyme과 Novazyme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미래 제품시장에서의 경쟁 뿐 아니라 혁신경쟁 자체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밝혔다.

한편 EU에서는 동태적 혁신경쟁을 고려하고자 하는 시도가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와 같이 어떤 특별한 접근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보다는 기업결합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혁신의 중요성, 진입장벽의 크기 등을 단순 고려하는 방식을 취

22) Genzyme과 Novazyme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FTC 조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Mozelle W. Thompson, Dissenting Statement of Commissioner Mozelle W. Thompson Genzyme Corporation's Acquisition of Novazyme Pharmaceuticals Inc., File No. 021-0026(2004)에서 참고할 수 있음

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Microsoft와 Skype 간의 기업결합 건²³⁾이 참고가 될 만한데, 동 사건은 온라인상에서의 문자 메시지(Instant messaging) 서비스와 화상통화(video calls) 서비스에 각각 강점을 가진 MS와 Skype가 신청한 기업결합 건이다. 동 사건에서 EU 경쟁당국은 관련된 제품(서비스) 시장으로 인터넷 통신시장을 크게 소비자통신(consumer communications)시장과 기업통신(enterprise communications)으로 구분하고, 이들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는 동태적인 성격을 가진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기업결합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동태적인 혁신을 부분적이고 정성적으로 고려한 바 있다.

동태적인 혁신에 대한 고려는 특히 소비자통신 시장에서 고려되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다. 1) 소비자통신서비스는 주로 무료로 제공되며 소비자들이 단순히 온라인 통신 보다는 다른 기능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Quality)이 중요한 경쟁요인이라는 점, 2) 과거 10여년 이상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 및 화상통신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R&D가 진행돼 왔으며, 그 결과 소비자 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의 수와 유형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 3) 소비자통신시장은 다양한 통신대역을 수용할 수 있는 비디오 코덱에서의 혁신이 중요한 시장이며, 동 시장 내에서 혁신의 주기가 짧기 때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들의 혁신이 지속됨으로써 혁신기업들이 선도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EU 경쟁당국은 동 기업결합 건에서 시장특성 차원에서 혁신을 고려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실제로 기업결합이 혁신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기업결합의 효과로 평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미래시장 접근법 및 사례

미래시장(Future market) 접근법²⁴⁾은 잠재적인 경쟁을 고려하기 위하여 잠재적 경쟁이론(Potential Competition Doctrine)을 확장한 것으로, 미래시장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23) Case No COMP/M.6281 - Microsoft/Skype, 7 October 2011.

24) 미래시장 접근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Landman, L. B. (1997). Economics of Future Goods Markets, The World Competition, 21를 참조할 것

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장래의 제품시장을 의미한다.

미래시장 접근법은 어떤 기업들이 기존의 제품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기업도 아니고 신규 진입자도 아니더라도 장래의 특정 재화시장에 관한 잠재적인 제품시장 경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비록 미래시장 접근법이 혁신경쟁을 전제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 제품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는 암묵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고려할 수는 있다. 나아가 잠재적 경쟁이론(Potential Competition Doctrine)이 실제로는 기존 또는 가까운 장래의 제품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만을 고려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품시장들에서 관련 기업들의 역할과는 무관한 혁신시장에 대한 고려도 가능케 해준다.

다른 한편으로 미래시장 접근법은 장래에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시장의 출현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시장 개념은 “장래의 제품시장경쟁을 보호”한다는 개념과는 달리, 어떤 미래 시장의 형성여부가 이슈가 되는 기업결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결합의 당사 기업들 중 한 기업의 R&D노력이 다른 기업결합 당사 기업의 기존 제품시장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품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미래시장 접근법은 기업결합의 당사 기업들이 장래에 관련 제품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쟁당국이 혁신경쟁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래시장 접근법에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Sensormatic (FTC 1995) 사건²⁵⁾이 있다. 유통 소매점에서 사용되는 EAS 시스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두 업체인 Sensormatic사와 Knogo사는 합병하기로 합의했는데, 동 합의에 의하면 Sensormatic사는 북미 이외 지역의 Knogo사가 가진 특허를 포함해 모든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합병에서 제외된 북미 Knogo는 계속 영업을 하면서 현재의 EAS시스템 시장에서 Sensormatic사와 경쟁을 하면서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아 개발 중이던 SuperStrip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면서 Sensormatic와 북미 Knogo는 SuperStrip 관련 특허와 영업비밀의 개량에 대해 무상으로 포괄적인 교차라이센싱을 허여하기로 합의하였다.

Sensormatic사와 Knogo사는 차세대 EAS인 SL(Source Labelling) 시스템 개발을 위

25) Sensormatic Elec. Corp., FTC File No.941-0126, 60 Fed. Reg. 5428 (1995)

해 경쟁을 하고 있었다. FTC는 양사 간의 기업결합과 포괄적인 라이선싱 계약이 북미 Knogo의 차세대 SL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경쟁 R&D를 감소시켜 Sensormatic사가 혁신경쟁에서의 지배력을 증가시켜 미래시장을 위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FTC는 동의명령을 내리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Sensormatic사가 SuperStrip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아가 양사 간 무상의 포괄적 교차라이선싱을 금지하였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SuperStrip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Sensormatic사가 허용받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였다.

미래시장 접근법은 실질 잠재적 경쟁(Actual Potential Competition) 개념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관측 가능한 혁신활동에 대한 식별을 필요로 한다. 만약 이런 관찰 가능한 혁신활동을 충분히 식별할 수 없다면, 특정 기업이 기존의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어떤 기업들을 “미래 시장 경쟁자(Future market competitors)”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의 혁신활동이 장래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야 하지만, 그런 시장의 형성여부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면 기업들의 혁신활동이 장래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극히 어려울 수 있다.

V. 결론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혁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시장구조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 혁신을 창출한 기업이 혁신 창출 초기에 초정상적인 이윤(supranormal profits)을 누리는 것을 혁신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함으로써 혁신기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시장 초기에 열등한 혁신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과 등과 같이 규제당국 또는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진화의 초기 단계에 개입하여 우월적인 혁신의 발전경로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동태적 혁신경쟁의 중요성과 시장경쟁이 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 대해 광범위

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경쟁당국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향후 경쟁법 집행에 있어 동태적 혁신경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 판단된다. 이미 미국의 경쟁당국은 2010년 기업결합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동태적 혁신경쟁을 기업결합 등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중요한 고려요소로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공정위 역시 그 동안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수차례 개정해오면서 특히 신규진입에 초점을 맞춰 향후 동태적 혁신경쟁을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 집행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쟁법을 집행할 때 구체적으로 동태적 혁신경쟁을 정확히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경쟁당국은 관련 제품시장에서의 경쟁, 그 중에서도 특히 정태적 경쟁(가격, 산출량, 광고 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초점을 맞춰 관련 제품시장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낸 후 반경쟁적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태적 관점에 기반한 경쟁법 집행은 동태적인 혁신경쟁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태적 혁신경쟁과 경쟁법 집행 접근에 대해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태적 혁신경쟁을 고려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접근법으로 “실질 잠재적 경쟁 접근법”, “혁신시장분석 접근법”, 그리고 “미래시장 접근법”과 각 접근법에 기반한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의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였다. 아직까지 경쟁법 집행시 동태적인 혁신경쟁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와 관련해 각각의 접근법 중 어느 하나가 특별히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어느 하나의 접근법에 집착하기보다 개별 사건의 본질과 특성, 혁신경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세 가지 접근법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태적 혁신경쟁에 관한 혁신효과와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특히 잠재적 진입자의 진입가능성 뿐만 아니라 기존기업 또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혁신인센티브, 혁신의 발전경로 등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중요한 과제이기에 본 논문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르지 못한 한계점을 갖지만 국내에서 관련된 후속연구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기준, 2015.6.30.
- 권남훈, 「동태적 혁신산업과 경쟁법의 집행」, 『경쟁저널』 제162호, 2012, pp.46-55.
- 대법원 2008. 5. 29, 2006두6659
- 대법원 2009. 9. 10, 2008두9744
- 연합뉴스 2017.7.10.자 기사(김상조 “경쟁법 집행에 경쟁도입...민형사 수단 활용”)
- Aghion, P., Bloom, N., Blundell, R., Griffith, R., and Howitt, P., “Competition and innovation: An inverted-U relationship,”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2), 2005, pp.701-728.
- Aghion, P., Harris, C., Howitt, P., and Vickers, J., “Competition, imitation and growth with step-by-step innovatio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8(3), 2001, pp.467-492.
- Arthur, W. B., “Industry location patterns and the importance of history,”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Stanford University, 1986.
- Arthur, W. B., “Positive feedbacks in the economy,” *Scientific American* 262(2), 1990, pp.92-99.
- Arthur, W. B., 『Increasing returns and path dependence in the econom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 Boone, J., “Competitive pressure: the effects on investments in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2000, pp.549-569.
- Boone, J., “Intensity of competition and the incentive to innovat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9(5),2001, pp.705-726.
- Breschi, S., Malerba, F. and Orsenigo, L., “Technological regimes and Schumpeterian patterns of innovation,” *The economic journal* 110(463), 2000, pp.388-410.
- Carlton, D. W., & Gertner, R. H., “Intellectual property, antitrust, and strategic

- behavior,”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3, 2003, pp.29–59.
- Clark J. B., “The Real Dangers of the Trusts,” *The Century Magazine* 68, 1904, pp.954–959.
- Dasgupta, P., and Stiglitz, J.,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nature of innovative activity,” *The Economic Journal* 90(358), 1980, pp.266–293.
- d’Aspremont, C., & Jacquemin, A., “Cooperative and noncooperative R&D in duopoly with spillove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8(5), 1988, pp.1133–1137.
- Dosi, G., “Technological paradigms and technological trajectories: a suggested interpretation of the determinants and directions of technical change,” *Research policy* 11(3), 1982, pp.147–162.
- Dosi, G., “Sources, procedures, and microeconomic effects of innov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88, pp.1120–1171.
- Dosi, G., Giannetti, R., and Toninelli, P., 『Technology and enterprise in a historical perspective』, Clarendon Press, 1992.
- European Commission, Case No COMP/M.6281 – Microsoft/Skype, 7 October 2011.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Regulation No. 1217/2010 of 14 December 2010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ategori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R&D BER), O.J. 2010 L335/36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Regulation No. 316/2014 of 21 March 2014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ategories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TTBER), O.J. 2014 L93/17.
- European Commission,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EC Merger Regulation), O.J. 2004 L24/1. Article 2(3)
-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81 of the EC

- Treaty to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 O.J. 2001 C3/02
- Fudenberg, D., Gilbert, R., Stiglitz, J., and Tirole, J., "Preemption, leapfrogging and competition in patent races," *European Economic Review* 22(1), 1983, pp.3-31.
- Futia, C. A., "Schumpeterian competi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4(4), 1980, pp.675-695.
- Gilbert, R. J., & Sunshine, S. C., "Incorporating dynamic efficiency concerns in merger analysis: The use of innovation markets," *Antitrust Law Journal* 63(2), 1994., pp.569-601.
- Hoechst AG, 120 F.T.C. 1010 (1995)
- Hoerner, R. J., "Innovation markets: new wine in old bottles?," *Antitrust Law Journal* 64(1), 1995, pp.49-73.
- Jorde, T. M. and Teece, D. J., 『Antitrust,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Kamien, M. I., & Schwartz, N. L., "On the degree of rivalry for maximum innovative activ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0(2), 1976, pp.245-260.
- Landman, L. B., "Economics of Future Goods Markets," *The World Competition* 21, 1997.
- Lee, T., and Wilde, L. L., "Market structure and innovation: a reformul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4(2), 1980, pp.429-436.
- Loury, G. C., "Market structure and innov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9, pp.395-410.
- Malerba, F. and Orsenigo, L., "Schumpeterian patterns of innov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1), 1995, pp.47-65.
- Morse, M. H., 『The limits of innovation markets』, ABA Antitrust and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2001.
- Mozelle W. Thompson, Dissenting Statement of Commissioner Mozelle W. Thompson Genzyme Corporation's Acquisition of Novazyme Pharmaceuticals

- Inc., File No. 021-0026(2004)
- Nelson, R. R., “Why do firms differ, and how does it matter?,”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S2), 1991, pp.61-74.
- Nelson, R. R. and Winter, S. G.,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2.
- Nelson, R. R., & Winter, S. G., “Neoclassical vs. evolutionary theories of economic growth: critique and prospectus,” *The Economic Journal* 84(336), 1974, pp.886-905.
- Nelson, R. R., Winter, S. G., and Schuette, H. L., “Technical change in an evolutionary model,”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6, pp.90-118.
- Rapp, R. T., “The misapplication of the innovation market approach to merger analysis,” *Antitrust Law Journal* 64(1), 1995, pp.19-47.
- Reinganum, J. F., “Uncertain innovation and the persistence of monopol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3(4), 1983, pp.741-748.
- Rockoff, H., “History and Economics,” In Monkkonen, E. H. (Ed.), 『Engaging the past: the uses of history across the social sciences』, Duke University Press, 1994.
- Scherer, F. M., & Ross, D., 『Economic Performance』, Boston: Houghton-Mifflin, 1990.
- Schumpeter, J.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and Brothers, 1942.
- Schumpeter, J. A., 『Business cycles』, New York: McGraw-Hill, 1939.
- Sensormatic Elec. Corp., FTC File No.941-0126, 60 Fed. Reg. 5428, 1995.
- Sidak, J. G., and Teece, D. J., “Dynamic competition in antitrust law,”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5(4), 2009, pp.581-631.
- Simon, H. A.,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9(1), 1955, pp.99-118.
- Teece, D. J., and Coleman, M., “The meaning of monopoly: antitrust analysis in

- high-technology industries,” *Antitrust Bulletin* 43, 1998, pp.801.
- United States v. Lockheed Martin Corp., Civ. No. 98-00731, 1998.
- U.S. Department of Justice & Federal Trade Commission,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2010.
- U.S. Department of Justice, 『Merger Guidelines』, 1982.
-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1984.
-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1995.
- U.S.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cipating the 21st Century: Competition Policy in the New High-Tech, Global Marketplace』, 1996.
- United States v. Falstaff Brewing Corp., 410 U.S. 526, 1973.
- Yao, D. A., and DeSanti, S. S., “Innovation issues under the 1992 Merger Guidelines,” *Antitrust Law Journal* 61(2), 1993, pp.505-521.

A study on the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and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Youngkwan Kwon*

Innovation is one of most critical drivers of economic growth and thus enhancing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is an important policy challenge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o do so, first and foremost, governments must play a proper role in both strengthening rewards for firms creating innovations and being superior innovations selected by markets. The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is upcoming issue to enforce competition law by competition authority, but the approaches or tools developed to enforce competition law based on static view of competition have critical limitations in considering the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Under this situation, there is lack of domestic researches and specific discussions on how to analyze the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From this perception, the paper specifically reviews the nature of innovation and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In addition, it investigates both some doctrines or approaches used in enforcing competition law in order to consider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and some related cases handled by foreign competition authorities. In order to analyze the 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it is desirable to sufficiently considering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novation

* Senior Research Fellow, Market Research Division,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youngkwan.kwon@gmail.com.

competition in question case and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innovation and/or anti-competitive effects by employing all of alternative doctrines or approaches if possible instead of sticking to superiority of them. Furthermore, competition authority needs to analyze the innovation incentives of incumbents and/or potential competitors and the evolutionary path of innovation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entry of competitors.

Key words: Innovation Competition, Dynamic Competition, Innovation, Competition Law, Approach.